

[영동군 공고 제2024 -1443호]

협 의 공 고 (공 시 송 달)

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'영동~용산1-2도로건설공사'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,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·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11. 01.

영동군수

1. 사업의 개요

- 사업명 : 영동~용산1-2 도로건설공사
- 사업위치 :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울리, 영동읍 설계리 일원
- 사업시행자 :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
- 보상업무위탁(수행)기관 : 한국부동산원(☎042-485-1152)

2. 협의기간·협의장소 및 협의방법

- 협의기간 : 본 공고 만료일부터 30일간(단,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
- 협의장소 :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, 사학연금회관 9층 한국부동산원
- 협의방법 :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,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,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.

3. 보상시기·방법 및 절차

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3인(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·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)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,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국(환경부)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(은행계좌 입금)할 예정입니다. 단, 소유권 이외의 권리(압류, 가압류, 근저당, 지상권 등)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.
-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로 설정되어 있는 관계인께서는 채무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이전까지 정당한 권리행사(보상금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등)를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

- 인감증명서(일반용) 1부, 인감증명서(부동산매도용 ※ 매수자 인적사항 : 국(국토교통부), 등록번호 : 232) 1부
 - 주민등록초본 2부(주소변경내역 표시)
 -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 - 예금통장, 신분증, 인감도장 지참
- ※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 체결 전 30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.

5. 협의공고(공시송달) 대상

- 붙임 공시송달 공고 조서 참조